

6.01

납부 조건

본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구는 공공시설법(Public Utility Code) §16481.1 및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 116916 에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고자 한다.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해당 법령에 기술된 절차는 본 규칙 및 규정보다 우선한다.

6.01.01 처리수 및 연간 원수

(a) 고지서 납부 및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 본 정책의 6.01.01, 6.03, 6.07 및 6.09 절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관할구의 상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을 구성한다. 이러한 정책 및 체납 통지 섹션은 영어, 민법 1632 조에 명시된 언어 및 관할구 서비스 지역 거주민의 최소 10% 이상이 사용하는 여타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정책은 관할구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관할구는 요금 체납에 따른 전년도 가정용 서비스 중단 건수를 매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정보를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관리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에 보고해야 한다.

(b) 고지서 납부. 모든 수도 요금은 명세서 발행 시 납부되어야 하며 청구서에 인쇄된 기한(발행일로부터 24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연체로 간주됩니다. 납부되지 않은 경우: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이십팔(28)일 - 1.5% 비율의 연체료가 해당 계정의 미납 잔액에 적용되며 연체 통지서에 대한 내용은 고객의 일반 납부서에 인쇄됩니다. 연체료 및 연체 납부 통지서는 납부 시까지 매월 표시됩니다.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오십오(55)일 - 최종 서비스 종료 통지서는 계정에 있는 이름을 가진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고객의 주소가 주거용의 부동산 주소가 아닌 경우 "입주자"로 발송된 서비스 주소로도 해당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최종 서비스 종료 통지서가 배송 불가로 인하여 반환될 경우,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임박 통지서는 서비스 종료 최소 7영업일 전에 해당 부동산의 시야에 잘 들어오는 위치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본 섹션에 의거하여 발행된 연체 통지서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고객의 이름과 주소, 2) 체납 금액, 3) 서비스를 피하기 위해 납부해야 할 일자, 4) 체납 요금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 5) 고지서 검토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 6) 고객이 체납 서비스 요금의 할부 상환을 포함하여 유예, 감액 또는 대체 납부 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설명. 스케줄 6-A에 표시된 서비스 요금이 계정에 추가되고 연체 잔액에 포함됩니다.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구십(90)일 - 연체 계정 잔액이 마감 기한 이전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스케줄 7-A에 표시된 대로 서비스 재개 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일단 서비스가 중단되면 서비스의 재개 전에 전체 계정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은 전화 530-273-6185로 관할구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하여 납부 연기 및 할부 상환 가능성을 비롯하여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피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거주 고객이 서비스 요금 감액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관할구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요금 감액은 연간 1회 허용된다.

고객은 요금을 선납하여 부재 시 상수도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고지서는 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의 신용 잔액을 반영한다. 보증금으로 예치된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c) 적격 고객의 납부 연기 또는 분할 상환 요청. 거주 고객이 서비스 요금의 분할 상환을 포함한 납부 연기 또는 대체 납부 일정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증빙 서류와 함께 서면 요청서를 관할구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격 고객은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고 (1) 가정용 서비스 중단이 고객의 서비스 주소 거주자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1차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공하는 고객과, (2) 고객이 수도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적인 곤란을 입증하는 고객이다. 고객 가정의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종합 지원, Medi-Cal, 생활보조금/캘리포니아 주 생활보조 프로그램(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 Program) 또는 여성 및 영유아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의 대상자이거나,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이라는 증거를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정상 과금 주기 내에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정 상태인 것으로 간주된다. 전술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고객은 매달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하는 현용 요금 외에 3개월에 걸쳐 체납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분할 상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체납 요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협정의 분할 상환 기간은 관할구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이 될 수 있으나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객이 협정에 따라 최소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거주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최소 5 영업일 이상 통지서를 게시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고지서의 유예 및 분할 상환 요청은 거주 고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중단 전에 관할구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하여 요청해야 한다.

서비스 복구 시, 정상 과금 주기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고객에 대한 재연결 수수료는 업무 시간 중 재연결(“서비스 재개”) 시 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업무 시간(“근무 시간 후”)에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재연결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에 대한 연간 조정을 거쳐야 한다.

(d) 마스터 미터(Master Meter)를 통해 제공되는 거주 임차인에 대한 상수도 서비스 중단. 관할구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기록에 고객으로 기재된 다가구 주거 구조 및 모바일 홈 파크(MHP)의 마스터 미터와 개별 계량기를 통해 거주 임차인에게 상수도를 제공한다. 다가구 주거 구조, MHP 또는 유사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관할구의 기록에 고객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정이 체납인 경우에는 해당 구조, MHP 또는 유사 시설의 각 공용 구역 및 출입구에 통지서 사본을 게시하는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거주 임차인에게 알리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ff. 6/93; rev. 6/11/03, rev. 8/10/05, rev. 09/12/07; rev. 02/27/19; rev xx/xx/xx

6.01.02 계절 관개 서비스

(a) 관할구 내부 신청인. 총 요금의 1/3을 4월 1일까지 또는 용수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소유자가 있을 경우 신청 시에 납부해야 한다.

eff. 03/11/98

총 요금의 1/3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7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의 연체료를 가산해야 한다. 7월 22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총 요금의 1/3을 8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9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의 연체료를 가산해야 한다. 9월 22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서비스 재개 시에는 부속명세서 7-A에 명시된 요금이 부과된다.

(b) 관할구 외부 신청인. 총 요금의 1/2을 4월 1일까지 또는 용수를 받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소유자가 있을 경우 신청 시에 납부해야 한다.

총 요금의 1/2을 6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7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의 연체료를 가산해야 한다. 7월 15일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서비스 재개 시에는 부속명세서 7-A에 명시된 요금이 부과된다.

rev xx/xx/xx

(c) 체납. 수도 요금을 체납한 신청인은 관할구가 후속 계절 관개 서비스 신청을 수락하기 전에 요금을 납부하거나 관할구와 당해 요금 납부에 대한 만족스러운 합의를 해야 한다. 2월 15일자로 미납된 모든 계절 관개 용수 계정에 10%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eff. 6/11/03

6.01.03 대기

모든 대기 요금은 명세서 발행 시 납부해야 한다. 대기 요금은 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면 체납이 되며 징수를 위해 CTX(County Tax Rolls)로 이관될 수 있다.

eff. 6/11/03

6.02 다중 계정

다음 중의 아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금 할인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계절 관개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다.

관할구는 캘리포니아 주 수자원법 2580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요금에 대한 책임을 진 자가 소유하거나 추후 취득한 모든 부지에 대해 유치권을 기록할 수 있다.

6.05 보증금

관할구는 모든 관할구 외부 고객 및 모든 관할구 내부 상업용 계정에 대해 부속명세서 6-A에 나와있는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업용 계정의 보증금은 1년간 예치된다. 동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해당 계정에 적용하거나 적시에 계정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다.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서비스를 재개하기 전에 최고 2개월 청구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적시에 계정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관할구 외부 고객의 보증금을 1년간 예치한다. 동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해당 상수도 계정에 적용하거나 있을 경우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

eff. 8/12/87; rev. 6/11/03, rev. 09/12/07, rev. 02/24/16

6.06 반환된 수표

미지급된 은행이 반환한 수표는 계정에 반환되어야 한다. 부속명세서 6-A에 나와 있는 반환 수표 수수료는 상수도 계정과 반환 품목으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여타 은행 수수료에 추가되어야 한다.

최종 서비스 중단 통지가 전달된 후 체납 고지서를 수표로 납부하고 수표가 은행에서 미지급 반환되는 경우, 본 규칙 및 규정의 6.01.01(b)에 의거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추가 통지 없이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서비스를 재개하기 전에, 계정의 전체 차액과 반환 수표에 대한 은행 수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

eff. 2/13/85; rev xx/xx/xx

6.07 서비스 중단

6.07.01 고지서 미납

관할구가 정한 시한 내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본 규칙 및 규정의 6.01.01(b) 조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 고지서

미납 시에만 상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정상 과금 주기 내에 납부할 수 없는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직면한 적격 고객에게는 6.01.01(c) 조에 명시된 체납 청구금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6.07.02 관할구 규정 위반

고객이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구는 고객에게 해당 불이행을 통지해야 한다. 고객이 합당한 시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구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rev XX/XX/XX

6.07.03 고객 서비스 중단 요청

고객이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구에 서면 요청을 하는 경우 관할구는 해당 요청의 법적 및 재정적 영향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6.08 관할구 외부 고객 요금

본 규정의 일람표에 명시된 모든 설치 비용 또는 월 요금은 관할구 외부 고객의 경우에 25% 증액된다.

rev. 04/25/06, rev. 09/12/07

6.09 수도 요금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청원

고객이 고지서, 고지서상의 요금 또는 체납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고객은 즉시 관할구 고객 서비스 직원에게 전화로 또는 직접 문의해야 한다. 고객이 전화로 또는 직접 관할구 직원에게 문의한 후에도 청구 금액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관할구에 서면으로 즉시 고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구에 서면으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이의 신청권은 소멸되며 즉석에서 거부된다. 적시의 서면 이의신청에는 고객이 고지서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우편, 이메일 또는 친전으로 발송할 수 있다. 관할구는 고객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분쟁을 WHO(Water and Hydroelectric) 위원회에 회부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관할구는 서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적시에 내려야 하며, 그

결정은 이의 제기 고지서에 존재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고객이 논쟁/검토 대상이 아닌 청구금액의 일부(즉, 월정액)를 납부한 경우에는 서면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관할구에 대한 서면 이의신청은 고객이 수도 요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다. 수도 요금 감액은 고객의 수도 요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Rev. xx/xx/xx

네바다 관개구
1036 W. MAIN ST
GRASS VALLEY, CA 95945-5424
전화번호: (530) 273-6185

계정 번호: 수령한 통지서 내용 참조
계정명: 수령한 통지서 내용 참조
서비스 제공 주소: 수령한 통지서 내용 참조
계정 납부 잔액: 0.00
납부 기한: 수령한 통지서 내용 참조
동봉된 금액: \$ _____

수표 수취인: 네바다 관개구

고객
우편 주소 1
우편 주소 2
시, 주, 우편번호

NEVADA IRRIGATION DISTRICT
1036 W MAIN ST
GRASS VALLEY, CA 95945-5424

납부 금액과 함께 해당 부분을 반환하십시오.

최종 독촉장

계정 번호
계정명
서비스 제공 주소

계정 납부 잔액
납부 기한

현재 귀하의 계정에서 연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수 예정을 공지하는 최종 통지서입니다. 귀하가 수령한 통지서에 표시된 납부 기한의 오후 5시까지 합당한 요금 납부 또는 요금 납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NID는 수도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여 요금 징수를 위한 조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귀하의 청구서 또는 본 통지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530) 273-6185 번을 통해 고객 서비스로 연락하십시오. 고객 서비스와의 통화 후에도 귀하의 청구서 또는 본 통지서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본 통지서의 접수로부터 15 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관개구 사무실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서 또는 통지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귀하는 연장 또는 대체 납부 일정과 관련한 자격을 갖추었을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전화 번호인(530) 273-6185 로 전화하여 연체 납부 잔액에 대한 분할 상황을 포함한 대체 납부 옵션에 대해 상담하고 귀하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수령한 통지서에 표시된 납부일의 오후 5시까지 요금 납부 또는 요금 납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수수료 및 벌금 부과.
- 서비스 중단.
-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체 계정 납부 잔액(모든 수수료 포함)을 납부해야 합니다.
- 월~금요일 오후 4 시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당일에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야일 경우 시간외 재개 요금이 부과됩니다.

최근에 납부한 기록이 있는 경우 고객 서비스 부서(530) 273-6185 에 연락하십시오.

다음은 최종 서비스 중단 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를 한국어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nidwater.com/customer-service-and-payment-information>

Este es un aviso de morosidad de cortesía. Para ver este aviso en español visite <https://www.nidwater.com/customer-service-and-payment-information> Ito ay isang magalang na paunawa ng pagkadelingkwente. Upang makita ang paunawang ito sa Tagalog bisitahin ang <https://www.nidwater.com/customer-service-and-payment-information>

這是「禮節性欠費通知」。欲以中文檢視此通知，請造訪 <https://www.nidwater.com/customer-service-and-payment-information>

Đây là thông báo nhắc nhở quá hạn. Để xem thông báo này bằng Việt Nam hãy truy cập <https://www.nidwater.com/customer-service-and-payment-information>

NEVADA IRRIGATION DISTRICT 1036 W MAIN ST GRASS VALLEY, CA 95945-5424 (530) 273-6185